

국제기아대책기구 보호정책

(Food for the Hungry Protection Policy)

목차

1. 기관철학
2. 근거
3. 보호 원칙과 핵심가치
 - 부록. 성착취와 남용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부록. 성매매와 매춘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1. 보호에 대한 기관 철학

국제기아대책은 모든 관계의 회복, 아동의 전인적 성장, 변화 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극심한 빈곤으로부터의 공동체 자립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국제기아대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 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무한한 가치와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번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10:10, 렘29:11)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개발과 가족, 공동체, 국가의 안녕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 근거

수혜자 가운데, 특별히 아동에 대한 학대와 착취는 실제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관으로서 우리가 아동과 취약한 사람들의 복지와 개발에 대해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던지 간에 이러한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제기아대책은 모든 직원, 파트너, 대표자, 자원봉사자 등 국제기아대책의 관계자 뿐 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지역공동체의 수혜자들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기위해서 예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응을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 보호정책에 대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책에 학대와 착취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기관과 관련 된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더 잘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제기아대책은 신체적, 정서적/정신적, 성적인 영역으로 학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 착취,

학대 및 아동학대와 관련정책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성경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국제기아대책의 책임에 기반하고 있으며, 고의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국제기아대책의 직원과 파트너들의 피해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국제기아대책과 같은 기관과 함께 일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우리의 정책은 수혜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가해자들을 폭로하고 행동을 확실하게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국제기아대책의 동의로 현재 보호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는 후원기관에게도 적용합니다.

3. 보호원칙과 핵심가치

1) 성경적 기초

- ✓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1:27)
- ✓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순종하게 하시며, 지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5:21)
- ✓ 하나님은 사람이 평화와 조화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12:18)
- ✓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상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29:11)

2) 국제기아대책의 가치

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예수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긍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랑의 실체이며, 의로운 청지기정신으로 창조세계의 피조물을 돌보는 기능적인 실체입니다. 어떤 형태의 학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폭력이 됩니다.

나. 우리의 사역은 관계적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은혜의 화평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의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와 완전하게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친밀한 행동으로서 성(Sex)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갈망하는 친밀한 관계를 거울에 비춘 것과 같습니다. 타락은 깨끗하고 선하게 지어진 모든 종류의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사역은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깨어짐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수치를 회복하고 사람 안에, 사람 간에 온전함과 완전한 치유를 기뻐하십니다. 성적인 범죄를 짓거나, 성 기반의 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보통 여성과 여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화평한 관계를 파괴합니

다. 생존자들과 가해자들을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보수하며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지혜롭게 일하고, 결과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모든 자원을 선교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원들 안에서 지혜와 신뢰를 추구합니다. 후원자들도 우리에게 그들의 자원을 위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숙련 된 직원을 보내 주셨고, 교회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우리는 겸손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엄을 인식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우리의 것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10:23-37) 이는 고아와 과부, 안식처와 긍휼이 필요한 억압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시편10:17-18, 이사야58:6-12) 상처를 입기 쉬운 사람들과 모든 형태의 학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많은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 우리는 아름다움, 선함, 진리를 추구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함, 진리의 사역과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깊이 체휼하시며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긍휼을 덧입으며, 가해자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103, 요한복음3:16-17)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압제 당한자들과 학대한 자들에게 아름다움, 선함과 진리를 목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호원칙

가. 국제적인 기준 - 국제기아대책 보호정책은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UN선언의 원칙들과 사무총장이 고시한 성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특별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아대책 사무소들은 활동하는 해당 국가들의 지역 법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은 UN의 파트너기관으로) 2003.10.9 사무총장이 고시하여, 모든 UN 기관들 및 협력 파트너들에게 적용하는 성 착취 및 성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특별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준과 절차들은 모든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기관들에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은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성 착취와 학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 부록1. 성 착취 및 학대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 부록2. 성 매매 및 매춘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국제기아대책기구

성 착취 및 학대, 아동학대에 관한 보호정책 (이하, 보호정책)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nd Child Abuse Protection Policy (“Protection Policy”)

2013.4.30

국제기아대책은,

1. 성인과 아동을 포함하여 수혜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또는 학대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2. 아동학대를 범하지 않습니다.
3. 성 착취 및 학대, 아동학대와 관련 된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보고합니다.
4. 성 착취 및 학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된 조사에 가담, 보고, 반대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목차

1. 적용대상
2. 성 착취 및 학대
3. 아동학대
4. 보고의무
5. 조사, 징계, 형사기소, 비밀유지
6. 보복

부록

- 보호담당리스트
- 국제기아대책 보호정책 서약서

1. 이 정책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이 정책은 모든 국제기아대책 직원, 관리자, 파트너, 대표자, 자원봉사자 및 국제기아대책의 사역과 연계된 어떤 “사람”들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정책은 국제기아대책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이든지, 쉼을 갖든지 또는 휴가를 떠난 상황에서도 항상 적용됩니다.

2. 성 착취 및 학대 (이하, “SEA”)

: 국제기아대책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어떤 형태의 성 착취 및 학대 행위도 금합니다.

가. 성 착취 및 학대 정의

- ✓ 성 착취는 어떤 사람이 성적인 목적으로 차별적인 힘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의 취약한 위치와 신용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강요 또는 계약에 의한 성적인 행위, 매춘 또는 포르노 등을 포함하며, 물건, 서비스, 돈, 약품, 안식처, 음식, 보호 또는 다른 혜택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람의 동의를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성 학대란,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신체적인 성적 접촉으로 힘에 의한 것이든지 불평등한 또는 강제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구호 수혜자들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특별히 성 착취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제기아대책 리더들에게는 성 착취와 학대를 피하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 금지된 활동들

국제기아대책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합니다.

- ✓ 18세 미만의 사람들과는 어떤 성적인 행위라도 금합니다. 이는 지역법에서 합법적인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8세 또는 그 이상 연령으로 오해 했다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 성 행위를 위해 돈, 고용, 물건, 서비스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적 호의, 어떤 형태이든지 치욕적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착취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 ✓ 국제기아대책 관계자와 수혜자들 간에는 어떤 형태의 성적 관계를 금합니다

3. 아동학대

: 국제기아대책은 아래에서 정의한 어떤 형태의 아동학대도 금합니다.

가.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이든지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상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 성 학대,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성적 접촉으로, 매춘, 아동이 가담한 포르노그래피를 포

함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성적인 행위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18세 또는 그 이상 연령으로 오해 했다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 신체적 학대, 실제로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적인 상처 또는 고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신체적인 학대는 일부러 치거나, 매질하거나 흔들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 방임,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아동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것으로 추위, 기아와 같은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과 아동의 건강과 개발의 손상을 초래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서 발달 또는 행동 발달을 손상시킬 만한 가혹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대우와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그들이 가치 없다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으며,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영적인 권위 (예를 들어, 성경, 교회전통, 교회 권위 등)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아동이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나. 금지 된 활동들

국제기아대책 수혜자들,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가운데 아동들과 연관 된 활동에서 국제기아대책 관계자들은 아래와 관련 된 어떤 활동도 금합니다.

- 성적
 - ✓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한 아동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성별이 다른 두 어른과 함께 하는 원칙을 가능한 지킵니다.
 - ✓ 성적인 방식으로 아동을 만지거나, 아동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 ✓ 아동에게 성적인 자극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 아동을 포르노그래피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이나 매체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 ✓ 아동과 같은 방 또는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 ✓ 성 학대 피해자가 학대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거나, 그(또는 그녀가) 부추기는 태도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체적
 - ✓ 지역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아동을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 정서적
 - ✓ 아동에게 수치, 굴욕, 하찮음, 모멸감을 갖게 하는 어떤 방식의 행동도 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학대도 하지 않습니다.

✓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영적이거나 의식 절차상의 학대 행위에 참여하게 하지 않습니다.

● 사진,

✓ 아동이 굴욕과 모멸, 수치스러움 느끼는 이미지 또는 모욕적인 이미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동은 적절하게 옷을 입고 있어야 하며, 성적으로 선정적으로 여겨지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 동의

✓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국제기아대책 활동에 아동이 등록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을 차에 태울 수 없으며, 적어도 한 명의 다른 성인이 차 안에 배석해야 합니다.

● 기타

✓ 미디어 출판물에 아동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며,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제기아대책 관계자의 집에 아동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 아동과의 만남이 있는 동안 또는 전에는 취기가 있는 상태 또는 술과 약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 아동에게 불쾌한 언어, 제안,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 안전하지 않거나, 모욕적이거나 불법적인 상황에 아동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 성 착취와 학대나 아동학대로 아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비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외부인들이 국제기아대책 프로젝트 지역에 방문하기 할 때는 감독을 받습니다.

4. 보고 의무

가. 모든 의혹을 갖는 사건은 업무기준 2일 내에 보고합니다.

모든 국제기아대책 관계자들은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에 관한 어떤 정황에도 업무기준 2일 내에 구두 또는 서면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 보고 대상

국제기아대책 관계자들은 의심스러운 또는 증거없이 주장 된 성 착취 및 학대, 아동학대를 반드시 아래의 대상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 해당지역 보호 주요담당자
- ✓ 해당지역에서 허용하는 기밀보고체계
- ✓ 상위관리자

부록에 국제기아대책이 활동하는 각 국가의 보호 주요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실시간으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설사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심 가는 위법행위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만약 국제기아대책 관계자가 잠재적인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위를 확보할 경우, 설사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국제기아대책은 피해자를 고려하여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요청에 맞서 피해자 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기아대책에서 잠재적인 위법행위를 지역의 조사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 국제기아대책 관계자가 관여하지 않은 혐의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 국제기아대책 관계자들은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용의자가 국제기아대책 관계자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용의자가 기관 관계자가 아닐 경우에, 본 기관은 적합한 기관에 사건을 회부합니다.

마.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 또는 기소 될 수 있습니다.

: 국제기아대책 관계자들은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황에 대해 알고 난 후 업무기준 2일 내에 그 사건을 보고하기 전에 사실확인까지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보고를 받은 상위자는 반드시 보고 받은 당일에 해당지역의 보호 주요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제기아대책 관계자가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놓칠 경우에는 처벌받거나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사, 처벌, 범죄조회 및 비밀유지

- 조사 의무: 국제기아대책이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에 관한 정황을 포착하며 즉시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처벌: 국제기아대책 관계자가 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에는 징계행위과 계약종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범죄 조회: 국제기아대책은 사건을 지역당국에 의뢰하여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 기관이 혐의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

지기도 합니다.

- 보안: 국제기아대책은 최대한 정책기밀의 잠재적인 위반사항에 관해 모든 보고서와 조사내용을 관리할 것입니다. 본 기관은 피해자와 증인들에 대해 완벽한 비밀유지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조사를 위해서 그들의 신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는 지방당국에 사건을 보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공유하며,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기관은 협의, 조사, 응답에 관한 문건들을 보관할 것입니다.

6. 보복

국제기아대책은 아래와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한 보복도 금합니다.

- ✓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의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
- ✓ 선의를 가지고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의혹을 고발한 사람
- ✓ 혐의가 있는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 된 조사에 참여한 사람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라도 즉시로 아래 사람들에게 신고합니다.

- ✓ 해당 지역 보호 주요담당자
- ✓ 해당지역에서 허용하는 기밀보고체계
- ✓ 상위관리자

국제기아대책은 보복을 행한 관계자들에게 징계 또는 계약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록A: 국제기아대책 각 사무소의 보호주요담당자 명단

부록B: 국제기아대책 보호정책에 관한 약속

모든 국제기아대책 직원, 대표자, 자원봉사자 및 본 기관의 사역에 연계 된 사람들은 매 3년마다 이 문건에 서명해야 합니다. 관련 된 국제기아대책 사무소는 서명한 문건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서약서

나는, 성 착취 및 학대, 성인 및 아동학대에 관한 국제기아대책 보호정책에 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합니다.

- ✓ 나는, 국제기아대책 보호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 ✓ 나는 보호정책에서 명시 된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아동학대에 관한 어떤 혐의를 받거나, 체포 된 바가 없습니다.
- ✓ 나는 자신이 위법행위로 기소된다면, 이 보호정책위반에 관한 조사에 협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나는 이 보호정책을 위반하는 어떤 혐의를 발견할 시에는 보호정책에 명시 된 대로 사건을 보고해야 함을 동의합니다.

이름: _____

직위/역할: _____

서명: _____

일자: _____

*13세 미만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아동을 대신하여 서명합니다.

*이 서약서에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지역 인사담당 또는 국제기아대책 대표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